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97
----------	-------

발의연월일 : 2014. 4. 25.

발 의 자 : 강동원 · 배기운 · 윤관석
유성엽 · 김광진 · 부좌현
장하나 · 조정태 · 심재권
유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수공 구조물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 규모 또한 커져 치수관리가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에 이상강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내수재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내화·내진을 위한 기준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 나.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인 층에 설치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
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②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인 층에 설치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시설을 설치할 것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